선관위, 盧대통령 중립 의무 위반 결정

靑 "법적 대응 검토"…'盧의 전쟁' 계속된다

헌소 등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 시도
정치적 타격 '도덕적 레임덕'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으로 일단 국정 및 정치권 장악력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선관위의 자제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미 선관위의 결정 전에 '불복' 입장을 시사한 바 있어 공언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발표,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며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선관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선거활동은 금지돼야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실제로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인 헌법소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국가기관 간 권한의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최대한 허용하는 쪽으로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공무원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 개정작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번 선관위의 위법 판결이 노 대통령의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노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선거법에 관한 한 최고 권위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묵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 후 30% 대까지 급등했던 노대통령 지지율이 '5·22 언론조치'와 '6·2 참평포럼 발언' 이후 20%선 붕괴 직전까지 가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대통령 '나 홀로 독주'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번 선관위의 판결이 지난 2004년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고, 탄핵 시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또한 열린우리당 해체에도 가속도를 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여명의 의원이 8일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관결로 추가 탈당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졌다. 범여권 통합 등에 있어 노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 결정 쟁점별 요지

쟁점	선관위 결정요지
중립의무위반여부	대선이 가까운 때 다수가 참석하고 방송중계된 집회에서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한 것은 중립의무 위반이다.
선거운동여부	강연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참여정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후보자 낙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미흡하다.
참평포럼의 선거 사조직여부	참평포럼 발족 후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7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현철(맨 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원 5명 "위반" 2명 "위반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7일 중앙선관위 표결에서는 참여한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위반'으로 결정했고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4 대 3으로 '위반' 의견이 많았으나, 과반이 안돼 고현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쪽에 합류하면서 4 대 4로 가부 동수가 됐고, 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법은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1차 표결에서 과반이 안될 경우 선관위원장도 '표결권' 을 갖도록 하고 있고,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됐을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은 표결에 참여한 한 선관위원이 밝힌 것이다. 그는 먼저 "청와대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 오전에 논의에 들어가 표결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안 듣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녹취록도 있고 영상도 봤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찬반이 그다지 팽팽하지도 않았다"며 "곧바로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관위원들은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아니라는 쪽으로 쉽게 결론 지었으며,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범여권의 후보가 결정이 안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인 김호열.전용태 위원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고현철 선관위원장, 박송하.손기식 위원, 국회가 선출한 김영신.김영철.김헌무 위원 등 8명이었으며 대통령 임명 케이스인 임재경 위원은 일본 출장중이어서 불참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눈치보기 판정" 우리·민주 "결정 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은 '유명무실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7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과 관련 일부 위법 판결을 내려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키로 한 데 대해 "유명무실한 결정이고, 눈치보기식 판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명무실한 선관위 결정이다. 참평포럼 강연은 언론 보도가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사조직 여부 판단 역시 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엄밀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이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 결정문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8차 전체 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행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 법조(항)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강연의 대상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위와 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를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기로 했다.